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1.31.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사우디아라비아로 식품을 수출할 시 적용되는 규제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 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식품 수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는 모든 일반 품목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만, **식품**의 경우는 화장품, 의약품 등과 같이 **사우디 식약청(SFDA)**의 관리를 받습니다. 모든 식품들은 SFDA 규정에 의해 **적합성 인증**을 받으며 식품의 성분, 라벨링, 영양정보 등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우디 식약청은 해당 식품이 사우디의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식품은 할랄(Halal)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SFDA(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하는 모든 식품은 식품의약국(Saudi Food&DrugAuthority, SFDA)이 규정하고 있는 수입 조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며, 수출용 라벨 작성 시에는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된 사진이나 이슬람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증구분 : 강제인증
- 적용 대상 품목 :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 인증 기관 : 사우디 식약청(Saudi Food & Drug Authority) <https://www.sfda.gov.sa/en>
- 인증 : **2022년 7월 1일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 할랄 인증 취득 필수**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의 적합성 평가 인증서 발급 필수
- 통관 검역 절차 : 수입 통관 사전 검토 → 인증 사전 검토 → 라벨링 사전 검토 → 통관제도 및 검역 항목 분석 → 사우디아라비아 유통

❶ 수입 통관 사전 검토

수입세금 확인

사전 등록

- 식품 의약국 사전 등록 : 현지 대리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하는 모든 식품 등록 필수
- 해외 시설 등록* : 식품 관련 수출업체의 등록 및 인증 절차 간편화를 위해 도입

* 해외시설등록 : 모든 식품 관련 수출업체, 도축장 및 공장의 등록 및 인증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도입

- 기관 :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
- 적용 품목 : 육류, 닭고기, 생선 및 기타 **모든 식품**
- 취득 절차 :
 - ①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 전자 시스템(E-Service)에서 개인 계정 생성
 - ② 계정 활성화
 - ③ 해외 시설 등록 : 해외 시설 관련 정보, 본사 주소, 공식 감독관 정보, 사업 영역, 위생 관련 정보 입력
 - ④ 필요서류 온라인 제출
 - 수출업체 : 등록 증명서(보건당국 발급), 공업 증명서(산업통상자원부 발급)
 -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수입 업체 : 상업 증명서, 인증 레터
 - 사우디아라비아 통관 브로커 : 통관 라이선스, 인증 레터
 - ⑤ 이메일로 결과 전송(승인 또는 거부)

❷ 인증 사전 검토

인증 취득 :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SASO) 적합성 인증*

선택 인증 : **할랄(Halal) 인증***

사우디의 식품의약국은 2019년 할랄 센터(Halal Center)를 설립해 외국 할랄 인증기관을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할랄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기름 및 지방, 제과류, 냉장 및 냉동식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상온 유통기한이 긴 제품은 2022년 7월 1일부터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사우디 표준청(SASO)을 통해 **제품 적합성 평가 인증서 및 제품 출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선적 인증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수입업자는 자신이 수입한 모든 제품에 SASO로부터 받은 로고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제품을 수입한 공장 목록을 SASO에 제공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SASO 표준 적합성 인증

- 인증기관 :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공단(SASO, Saudi Arabian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전자 인증 플랫폼 SABER 시스템으로 신청
- 등록 주체 : 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든 소비재의 수입업체 및 현지 제조사

- 절차

① 검사 신청

② HS CODE와 사우디아라비아 기준에 따른 규제 상품 및 비규제 상품으로 구분

③ 서류 심사 단계

④ 규격 인증서 발행

- 제출서류

- 검사 신청서(RFI : Request for Inspection) : 희망 검사 장소, 일시, 기타 사항을 기재
- 공인된 실험실 혹은 국제 실험실 인증협회 (ILAC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rporation)로부터 인증된 실험실에서 발행한 테스트 결과 또는 인증서(Certificate)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Pro-forma invoice/ Contract Sheet
- 패키징 리스트(Packing List)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검사 물품의 해당 규격을 신고한 문서-당사 양식
- GOST-R, CE 등 Product Standard Certificate (요청 시)

- 검사항목

- 신고 규격 정확성
- 제출 테스트 결과 보고서
- 인증서 유효기간
- 표준 규격에 따른 테스트 항목 적합성
- 물품 검사 : 서류 명시 규격과의 일치 여부
- 수량 검사
- 샘플 채취

*할랄(Halal) 인증

- 기관 :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 산하 할랄 센터(Halal Center)

- 적용 품목 : 육류 및 육류 기반 제품(현행 기준)

- 취득 절차

① 할랄 인증 신청서와 기업명, 관련 정보를 할랄 센터 이메일로 제출

② 신청자의 서류와 수수료 지불 증명서 수취 후, 할랄 센터가 신청자의 자격 평가 후 답변

③ **자격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할랄 센터가 검사 비용을 포함한 계약서 전달**

④ 감사팀이 시설의 할랄 표준 및 계측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시설 방문

⑤ 할랄 결정 위원회에서 신청자의 할랄 인증서 발급

- 필요 서류

- 원산지 국가의 수출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수입증명서
- 회사 프로필 및 회사용 품질 매뉴얼
- 위치 지도 및 공장 배치도

- 제품 라벨 및 최종 제품 양식
- GSO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공인 연구소(ISO 17025)의 실험보고서
-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에서 인정하는 제품 안전 관리 시스템 또는 GMP 인증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문서화 된 증거
- 할랄 시스템의 제조 공정 및 장비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원재료 및 포장 재료가 할랄이라는 공급자의 증명서(적용되는 경우)
-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제품 구성 및 원재료 농도 보고서

③ 라벨링 사전 검토

- 필수 표기 사항 : 제품명, 원재료, 영양정보, 순중량, 업체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날짜, 보관 및 사용방법
- 주의 표기 사항 : 신체 노출이 과도한 그림 또는 사진은 라벨에 포함하지 않을 것
이슬람에 반하는 내용 또는 사진을 라벨에 포함하지 않을 것
불법적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명칭 또는 용어, 그림을 사용하지 않을 것
- 표기 언어 : 아랍어로 표기 / 외국어 병기 가능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정보는 반드시 아랍어로 동일하게 작성해야함

④ 통관 제도 및 검역 항목 분석

- 수출 신고
- 수입 신고 : 전자통관시스템(E-Clearance)
- 주요 제출 서류 : 수입신고서, 상업 송장, 원산지증명서, 위생검사서, 보험증명서(CIF인 경우), 선하증권
- 검역 : 일반 가공식품은 식품의약국의 검역 대상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현물의 일치 여부, 돈육과 주류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물품 및 성분 포함 여부 등을 확인

또한 제품에 따라 관할기관에의 제품등록 서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사우디아라비아 : 식품 첨가물 및 유해물질 등 기준

▶ 식품첨가물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가입 회원국으로 걸프협력회의 표준 기구(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GSO)에서 제정한 'GSO 2500/2019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물'에 따라 사용 가능한 첨가물 및 최대 허용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언급된 첨가물만이 식품 내 사용이 허용되며, 해당 식품첨가물도 기준치에 따라 최대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 유해물질

걸프 표준화 기구(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GSO)는 식품 내 오염물질에 대하여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포장, 운송 등의 과정에서 식품에 의도적이지 않게 첨가된 모든 물질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식품에 포함된 오염물질은 식품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은 **걸프 표준화 기구의 식품 내 오염물질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는 식품만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일반 식품에 적용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유해물질 기준(일부 기재)

물질명(한글)	물질명(영문)	최대허용량	식품 유형
아플라톡신 토탈	Aflatoxins total	20µg/kg	일반 식품
아크릴로나이트릴	Acrylonitrile	0.02mg/kg	
멜라민	Melamine	2.5mg/kg	
염화 비닐 단량체	Vinyl chloride monomer	0.01mg/kg	

주의 사항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여러 국가로의 수출시 아래와 같은 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출 물품이 이스라엘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 인보이스에 해당 내용 기재
- 수출 물품을 선적한 선박편/항공편이 이스라엘에 기항하지 않았다는 증명: 선사나 항공사에 의뢰하여 취득
- 보험회사가 이스라엘 회사가 아니라는 증명: 수출 화물의 보험사가 중동 내 수출 대상국에서 지정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자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취득

※출처

- 사우디 식약청(Saudi Food & Drug Authority)
<https://www.sfda.gov.sa/en>
- KOTRA 해외시장뉴스 : 사우디아라비아 주스 시장 동향(2024-09-06)
<https://me2.do/F88yREc5>
- KATI 농식품수출정보 : 2021 사우디아라비아 홍삼차 보고서(시장분석형)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5508&menu_dept2=49&menu_dept3=368
- 일본 JETRO : サウジアラビア輸出入手続
https://www.jetro.go.jp/world/middle_east/sa/trade_05.html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문의처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현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에는 해당 현지 언어(아랍어) 지원 인력이 없어 문의하신 건에 대해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KOTRA 리야드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riyadh/KTMIUI010M.html>
TEL: ++966-11-273-4496 / FAX: ++966-11-273-4749, 4750 / kotrariy@kotra.org.sa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상담 1566-5114 http://tradesos.kita.net/trade_sos/tradesos.jsp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